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2월 20일

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23093호, '11. 8.24시행)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「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」(행안부예규 제380호)이 제정·시달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조정과,
- 실무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564명(변동없음)
- 직종별 · 직급별 정원조정
 - 일반직 : 1,236명 → 1,250명(+14명)
 - 6급이하 : 1,148명 → 1,162명(+14명)
 - 기능직 : 265명(변동없음)
 - 별정직 : 27명 → 13명(△14명)
- 정원책정기준 조정
 -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현행	5%이내	15%이내	21%이내	33%이내	26%이상
개정	5%이내	15%이내	21%이내	59%이상	

-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	6급	7급	8급	9급
현행		60%이내	40%이상		
개정		50%이내	50%이상		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제1항 및 제3항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제1항제4호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- 「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」 (행안부예규 제380호)
 - ※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걸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운영중인 보건진료소의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보건위생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,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이 1,236명에서 1,250명으로 14명(6급이하 1,148명에서 1,162명으로)이 증가되고 별정직은 27명에서 13명으로 14명 감소되어 직종별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정원의 총수는 변동 없음.
- 정원책정 기준조정(별표 2)은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으며, 기능직 공무원 9급은 33% 이내에서 59%이상으로 하고 10급은 폐지하며, 별정직 공무원은 6급은 50%이내, 7급 50%이상으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지난 8월 24일 개정된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및 「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」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과 보건위생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 및 일선 보건진료원의 처우개선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